

발 간 등 록 번 호

76-6480000-000438-01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2024년

경상남도 일상감사 업무편람



경 상 남 도
[감사위원회]

○ 목 차 ○

I. 일상감사 제도의 이해

1. 일상감사 개요	3
2. 일상감사 처리절차	9
3. 일상감사 업무처리 세부절차	10
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	11

II. 분야별 감사 기준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15
2.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 매각)	16
3. 예산관리업무	42
4. 기타업무	43

III. 일상감사 주요 점검사항

1. 일상감사 Check-list 작성	47
2. 일상감사 자체점검 Check-list (양식)	48
3. 주요 감사 지적사례	54

IV. 일상감사 주요사례

1. 공사분야	63
2. 용역분야	71
3. 물품분야	78
4. 기타분야	81

V. 참고자료

1.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87
2.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95
3.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110
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21
5.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	126

I. 일상감사 제도의 이해

1. 일상감사 개요
2. 일상감사 처리절차
3. 일상감사 업무처리 세부절차
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

I 일상감사 제도의 이해

1 일상감사 개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인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예산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가. 관련법령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 ▶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나. 일상감사의 개념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앞서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

다. 주요내용

1) 일상감사 실시주체

가) 道 감사위원회 :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제3조(적용범위)

- 본청(의회사무처 포함),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비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포함) 및 보조 단체,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료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단체 제외

나) 소방본부(소방감사과) : 소방본부 소관 일상감사 대상사업

다) 시·군(자체 감사기구) : 시·군 대상사업

**참고1. 일상감사의 적용범위**

연번	구분	기관명
계	53개 기관	
1	본청 (1)	① 도본청(서부지역본부 포함)
2	직속기관 (5)	① 농업기술원 ② 인재개발원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경남도립거창대학 ⑤ 경남도립남해대학
3	사업소(15)	① 서울세종본부 ② 동물위생시험소 ③ 수산자원연구소 ④ 수산안전기술원 ⑤ 산림환경연구원 ⑥ 환경교육원 ⑦ 도로관리사업소 ⑧ 항만관리사업소 ⑨ 문화예술회관 ⑩ 제승당관리사무소 ⑪ 도립미술관 ⑫ 농업인력자원관리원 ⑬ 경남대표도서관 ⑭ 경상남도기록원 ⑮ 축산연구소
4	합의제행정기관 (2)	① 자치경찰위원회 ② 감사위원회
5	도의회 (1)	① 의회사무처
6	출자·출연기관 (16)	① (주)경남무역 ② (재)경남한방향노회연구원 ③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④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⑤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⑥ (재)경남연구원 ⑦ 경남신용보증재단 ⑧ 경상남도마산의료원 ⑨ (재)경남테크노파크 ⑩ (재)경상남도장학회 ⑪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⑫ (재)경상남도관광재단 ⑬ (재)여성가족재단 ⑭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⑮ (재)경남로봇랜드재단 ⑯ (재)평생교육진흥원
7	보조단체 (11)	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② 경상남도체육회 ③ 장애인체육회 ④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⑤ (사)경남교통문화연수원 ⑥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⑦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⑧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⑨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⑩ 아동복지협회 ⑪ 경남메세나협회
8	공기업 (1)	① 경남개발공사
9	지방의료원 (1)	①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2) 일상감사의 실시

- 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 (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최종 결재권자 (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 및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 나)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
- 다)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대안 및 시정방안 등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 라)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
- 마)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3)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신청시기

대 상 업 무	신청시기	신청부서	비고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4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 (집행과정, 평가결과 확정 전)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집행부서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인 국·도비 보조사업 (단, 단순히 보조금만 교부하는 사업은 제외)			
- 민간보조사업,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 사항			
- 기타 기관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기관장·부기관장 등의 결재 및 이사회 등 주요 회의 부의사항 등)			



대 상 업 무	신청시기	신청부서	비고
· 계약업무(5종)			
- 추정가격 ¹⁾ 기준 종합 5억원, 전문·기타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집행부서 계약부서	
- 국·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자산 매각,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거나 6천㎡ 이상의 재산 취득)			
-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법령에 정한 금액 이하 계약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 예산관리업무(5종)			
- 예산 이용·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건당 5천만원 이상 이용·전용, 명시 및 사고이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집행부서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예비비 지출 결정 전)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00만원 이상)			
- 기관의 주거래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 기타 도지사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집행부서	

1) 추정가격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명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신청방법 : 집행부서의 장(계약업무일 경우는 계약부서)이 신청

5) 처리기한 :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심사는 10일 이내

6) 중점 감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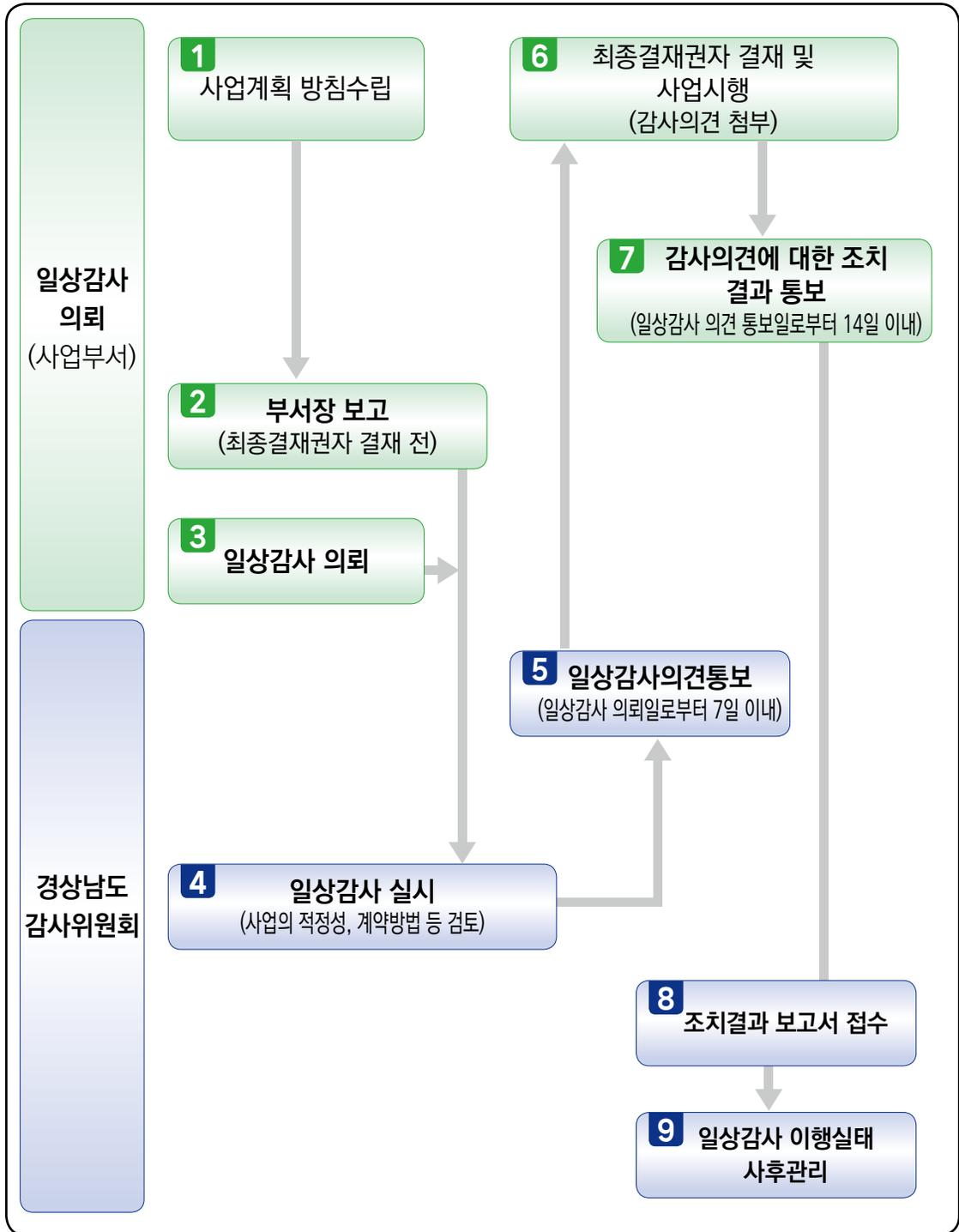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경제성·효과성·효율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채원조달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참고2.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구분

구분	일 상 감 사	계 약 심 사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조 · 「계약심사 운영요령 (행안부 예규)」 · 「경상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청(의회 포함), 직속기관·사업소 · 합의제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 道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료원 등 ※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된 소방본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감사위원회 : 일상감사 대상기관 · 도 회계과 : 시·군
대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업무(정부 및 도)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인 국·도비 보조사업(단순 보조금만 교부 사업은 제외) - 민간보조사업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 기타 기관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 계약업무 (추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5억, 전문·기타공사 3억, 용역 2억,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부동산 및 물품매각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거나 6천㎡ 이상의 재산 취득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법령에 정한 금액이하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 -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 이상 증가 · 예산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이용·전용(건당 5천만원 이상) 및 이월(확정 전)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결정 전) 및 지방채 발행 - 업무추진비(3백만원 이상) 관련 지출 -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 · 기타 도지사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심사(추정금액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5억원 이상의 공사 -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 문화재수리공사, 소방공사 3억원 이상 - 기술용역 2억원 이상 - 학술, 일반용역 1억원 이상 -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가(2회 이후 누적 설계변경금액)
중점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효과·효율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산정(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각종 법정경비요율 -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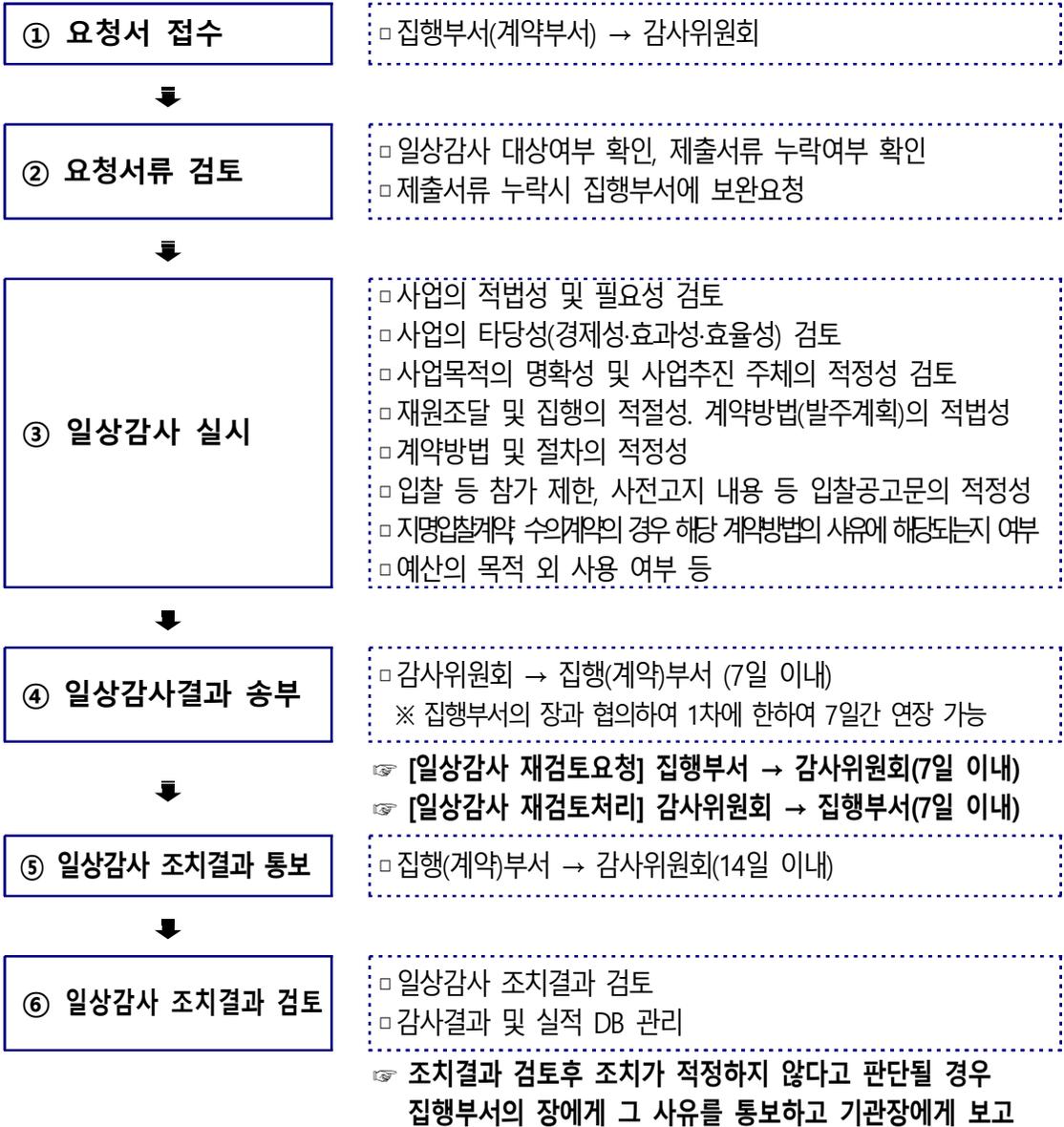
2 일상감사 처리절차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일상감사 업무처리 세부절차



 **일상감사 의뢰시 제출자료**

- 일상감사 요청서
-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입찰공고문
-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또는 방침서, 관련 법령,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

○ 일상감사 실적(2019년 ~ 2023년)

(23.12.13.기준)

연 도	분야별	건 수	감 사 결 과			비 고
			적 정	의견제시	부적정	
합 계		4,680	3,156	1,474	50	
2023	소 계	983	546	425	12	
	공 사	221	65	156	0	
	용 역	237	103	131	3	
	물 품	413	317	89	7	
	예 산	72	38	33	1	
	기 타	40	23	16	1	
2022	소 계	844	490	328	26	
	공 사	197	88	109	0	
	용 역	219	103	110	6	
	물 품	373	273	87	13	
	예 산	46	22	19	5	
	기 타	9	4	3	2	
2021	소 계	862	548	308	6	
	공 사	159	66	93	0	
	용 역	216	130	83	3	
	물 품	415	329	84	2	
	예 산	63	19	43	1	
	기 타	9	4	5	0	
2020	소 계	890	673	215	2	
	공 사	133	72	60	1	
	용 역	197	106	91	0	
	물 품	479	461	17	1	
	예 산	71	30	41	0	
	기 타	10	4	6	0	
2019	소 계	1,101	899	198	4	
	공 사	157	88	69	0	
	용 역	176	113	62	1	
	물 품	469	443	25	1	
	예 산	298	255	41	2	
	기 타	1	0	1	0	

※ 의견 : 관련 법령 등에 위배는 없으나 집행의 효율적 방안 제시



○ 계약심사 실적(2019년 ~ 2023년)

('23.12.13.기준)

연 도	분야별	건 수	심 사 결 과(백만원)				비 고
			요청액	심사액	증감액	절감율(%)	
합 계		1,954	1,532,071	1,498,256	△33,815	2.21	
2023	소 계	366	269,380	264,823	△4,557	1.7	
	공 사	147	200,633	196,776	△3,857	1.9	
	용 역	91	53,615	52,989	△626	1.2	
	물 품	128	15,132	15,058	△74	0.5	
2022	소 계	420	387,401	378,571	△8,830	2.3	
	공 사	194	313,103	305,749	△7,354	2.3	
	용 역	99	55,367	54,018	△1,349	2.4	
	물 품	127	18,931	18,804	△127	0.7	
2021	소 계	385	294,814	283,933	△10,881	3.7	
	공 사	140	211,393	201,701	△9,691	4.6	
	용 역	105	63,793	62,842	△951	1.5	
	물 품	140	19,628	19,390	△238	1.2	
2020	소 계	430	298,154	290,618	△7,536	2.5	
	공 사	92	205,451	199,403	△6,048	2.9	
	용 역	103	57,032	55,653	△1,379	2.4	
	물 품	235	35,671	35,562	△109	0.3	
2019	소 계	353	282,322	280,311	△2,011	0.7	
	공 사	102	200,137	198,692	△1,445	0.7	
	용 역	75	56,542	56,065	△478	0.8	
	물 품	176	25,643	25,554	△89	0.4	

Ⅱ.분야별 감사 기준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업무

4. 기타업무

Ⅱ 일상감사 범위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평가 업무

- 1) 관련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2) 신청시기 : 집행과정, 평가결과 확정 전
- 3) 감사요청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 요청서
 -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4) 주요 검토사항
 - 평가의 목적,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적정 여부
 - 평가방법, 절차 등 적정여부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투자심사 의뢰 전)
- 3) 감사요청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 투자사업 시행계획서
 - 사업비 재원 확보 계획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 4) 주요 검토사항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다.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3) 감사요청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 사업 시행계획서
- 사업비 재원 확보 계획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4) 주요 검토사항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소요예산 조달계획 등

라. 기타 기관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 기관장, 부기관장 등의 결재 및 이사회 등 주요 회의 부의 사항 등

2 계약업무

가. 공사분야

1) 신청대상

구 분	공 사		비 고
	종합건설	전문건설 및 기타**	
추정가격*	5억 원	3억 원	

* 추정가격 = 총공사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기타공사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등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3) 감사요청 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자체점검표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
- 입찰공고문, 사업 시행계획서
-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이행요청서
- 설계내역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전산 참고자료 (엑셀 내역파일, 설계도면 등)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실정보고서 등 관련자료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4) 주요 검토사항

- 공고기간, 사전고지 내용 등 입찰공고문 작성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적정성
-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 사유에 해당여부
- 긴급 입찰사유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등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필수 관급자재(외장재, 냉난방설비 등) 낙찰 여부
- 발주처 별도 계약사항 내역 포함 여부
- 시방서 등 계약서류 상 과도한 책임전가 등 갑질요인 포함여부 등
- 100ton 이상 건설폐기물 별도 내역서 작성 여부
- (설계변경) 설계변경 대상 여부, 계약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등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공사로서 ①1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의 20% 이상 증가 또는 ②최종 추정금액이 새로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할 경우



참고 1. 공사의 분류 및 개념

구 분	관련법	개 념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및 가지정문화재와 이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기타공사	-	산림사업,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참고 2. 공사분야의 세부 검토사항

① 입찰공고문 (공통 - 공사, 용역, 물품)

구 분	검 토 사 항
<p>일반사항 (공사, 용역, 물품)</p> <p>「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p>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물품)</p> <p>「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조달발주 계약의뢰 시 적정여부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p>건설공사 관련</p> <p>「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 2.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3.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아니함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단,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아니함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7.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다만,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 반영
<p>공동계약 관련</p> <p>(공사, 제조 등)</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아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계약의 유형 <p>①공동이행방식, ②분담이행방식, ③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④주계약자 관리방식</p>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사항 3) 지역외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2.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어느 하나의 공종만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 가능함을 명시

구 분	검 토 사 항
	5.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p>	<p>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사후정산 대상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공사, 용역, 물품)</p>	<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명시 2)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작성 제출 및 법 제4조 및 제9조 사항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또는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2.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4.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낙찰자 결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함 (신설 '23.7.12. 시행)



2 원가계산서

구 분	검 토 사 항
원가계산 작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 여부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2. 12. 23. 개정, '23. 1. 1. 시행) 2) 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각종 제경비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상·하반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 계산 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 계산 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1.86%시 5,349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율(10%)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3 설계내역서

구 분	검 토 사 항
내역서 수량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로 수량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 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 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 등을 재료비 + 노무비 + 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 공사비로 산정 여부 예) 가설비(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안전관리비, 기술료, 품질 관리비 등
중복공종 포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하지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지는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노무비 추가 지급 등 이중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하여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중 발생하는 철강재 등 자재의 작업부산물을 직접공사비(재료비)에서 공제 하였는지 여부 ○ '건설공사 표준품셈 1-3-6. 발생재의 처리' 참조 ※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작업부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4 일위대가서

구 분	검 토 사 항
표준시장단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공사 우선 반영여부 확인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미반영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표준품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 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또는 손율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여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 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단가 적용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 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5 기계경비

구 분	검 토 사 항
소요장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와 적절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손료 적용 적정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 적정 적용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6 단가조사서

구 분	검 토 사 항
적정 단가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2개 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단가 중 높은 간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절한지 여부 ○ 단가적용 시 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제외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설비공사)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설비공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7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구 분	검 토 사 항
조달구매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 관급자재 선정 적정 여부 및 가격 확인
시중자재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정보,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시중물가자료지 활용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성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8 설계변경

구 분	검 토 사 항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1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설계변경 등으로 새로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제비율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제비율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될 시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제비율을 초과할수 없음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사유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한 실정보고 승인 · 결재문서번호 및 결재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주체 확인(발주자, 계약당사자)
설계변경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 설계변경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내역서(계약단가) 누락, 오류 : 설계변경 대상 아님
계약단가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1) 물량감소 : 계약단가 2) 물량증가 :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 중 작은 금액 3)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1) 물량감소 : 계약단가 2)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 단가 : 협의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을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 단가 결정,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중간금액으로 결정 ※ 중간금액 :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사의 예정가율, 낙찰률 파악 - 예가율 : 예정가격금액 / 설계금액 × 100% -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금액 × 100%

나. 용역분야

1) 신청대상 : 추정가격 기준의 용역 2억 원 이상

※ 계약심사 : 추정금액 기준의 기술용역 2억 원, 일반·학술용역 1억 원 이상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3) 감사요청 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자체점검표
-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 여부 검토서
-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비교 및 사유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상사업 검토서
- 입찰공고문, 사업 시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설계내역서 (비목별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서류

4) 주요 검토사항

- 공고기간, 사전고지 내용 등 입찰공고문 작성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여부 등 절차의 적정성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3.3억원 미만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 여부, 보완요청 사항



참고 1. 용역의 분류 및 종류

1 용역의 분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다목, 「주택법」 제4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원가계산서 작성

나. 학술용역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다.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2 용역의 종류

구 분		검 토 사 항
기술용역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아래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엔지니어링 용역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아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견적(見積)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조사·설계·감리·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주택법」에 의한 감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
학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한국연구재단 발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일반용역	정보통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용역으로 구분
	소프트웨어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 사업,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
	시설분야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경상남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기준 반영)
	육상운송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 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기타 일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행사대행, 보험, 광고·디자인, 장비 유지·보수, 교육, 의료서비스 등

※ 참조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감사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2. 용역분야의 세부 검토사항

1 입찰공고문

구 분	검 토 사 항
<p>일반사항 (공사, 용역, 물품)</p> <p>「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용을 포함한다) 15.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p>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물품)</p> <p>「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조달발주 계약의뢰 시 적정여부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p>건설공사 관련</p> <p>「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 2.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3.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아니함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단,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아니함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7.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다만,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 반영
<p>공동계약 관련</p> <p>(공사, 제조 등)</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아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계약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공동이행방식, ②분담이행방식, ③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④주계약자 관리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사항 3)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2.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어느 하나의 공종만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 가능함을 명시



구 분	검 토 사 항
	5.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p>	<p>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사후정산 대상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공사, 용역, 물품)</p>	<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명시 2)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작성 제출 및 법 제4조 및 제9조 사항 명시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또는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2.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 용역분야별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기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국토계획 표준 품셈 등에 따라 산출된 용역비 적정성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전기공사),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정성
학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 상호간 내용 일치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 적정성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 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적정 반영 여부
일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관련서류 상호간 내용 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적용 대가기준 및 적용 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업업무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는 경우 준수 여부 ○ 노무비 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 산정 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3 산출내역서

구 분	검 토 사 항
적정단가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가격 적용 시 2개 이상 업체 견적을 받아 적용 여부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연도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 적용 여부 ○ 예비, 자문회의 수당, 조사원 단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적정수량 산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소요량 등 산출 시 단위환산에 따른 물량산출 오류 및 소요량 대비 과다 산출 여부 ○ 과업내역서에 비해 용역인력 과다 계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원(총괄) 1인 원칙, 보조원(단순노무원 등) ○ 예비 적용일수 및 인원 과다계상 여부
중복 산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공무원의 여비를 용역비에 계상하였는지 여부 ○ 이윤 산정 시 재료 구입비 포함 여부 ○ 견적이 적용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여부 ○ 용역업체 관리가 필요 없는 항목에 일반관리비, 이윤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관급자재비, 외주금액 등)
항목적용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이 합쳐진 단일 용역에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비영리기관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었는지 여부 ○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 등 요율 산출 적정 여부 ○ 지방소득세, 퇴직충당금 등 적정 반영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 중앙부처 등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기준, 매뉴얼이 있을 경우 세부항목 기준 준수 여부

다. 물품분야

1) 신청대상 : 추정가격 기준의 2천만 원 이상

※ 계약심사 : 추정금액 기준의 2천만 원 이상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3) 감사요청 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자체점검표
-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 여부 검토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 입찰공고문, 사업 시행계획서, 과업이행요청서
-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해당 물품의 설계도서(일반도 및 시공상세도, 시방서, 규격서, 제조원가 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등 포함)
-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 물품 원가계산서,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 단위별 내역서,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가) 공통사항

- 공고기간, 사전고지 내용 등 입찰공고문 작성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물품선정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 여부, 보완요청 사항

나)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의 집행기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분할발주 여부 검토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
 - 공사 관련 법령 준수여부, 목적물의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하여 분할 발주 여부 검토 (종합쇼핑몰 현장설치도 물품구매 건 포함)
 - ※ 분할발주 여부 검토서 제출
- 분할발주 하지 않을 경우
 - ① 예정가격산정 시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누락 여부
 - ②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부분에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계상 여부
- 감사중점
 - 물품 구매시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일부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공사 발주 원칙
 - ※ 종합쇼핑몰 현장설치도 물품 구매 제외
 - 신청부서에서 작성한 분할발주 검토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



주의사항

- 설치비가 포함된 물품은 물품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타 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에 준하는 관리
- 제조 공장이 아닌 설치 현장에 대하여 보험 가입 유·무 확인

다) 물품구매 입찰과 제조·구매 입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물품구매과 제조구매 입찰은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
-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 입찰 참여

라) 종합쇼핑몰을 통한 일반물품 구매

- 일반물품 : 제품(자재) 자체로서 완성된 물건, 하수관, 블록 등 공사용자재,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기자재
- 감사중점 : 물품선정 계약심사 절차 이행 후 자재선정방침 등의 사항

참고 1. 물품분야의 분류 및 개념

가. 물품의 제조(제작·설치)구매

-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정 규격품의 제조 및 제작설치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검토

나. 완제품 구매

- 이미 제조 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의 구매가격 적정여부 등 검토



참고 2. 물품분야의 세부 검토사항

1 입찰공고문

구 분	검 토 사 항
<p>일반사항 (공사, 용역, 물품)</p> <p>「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p>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물품)</p> <p>「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조달발주 계약의뢰 시 적정여부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p>건설공사 관련</p> <p>「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 2.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3.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아니함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단,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아니함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7.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입찰공고문에 반영. 다만,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 반영
<p>공동계약 관련</p> <p>(공사, 제조 등)</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아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계약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공동이행방식, ②분담이행방식, ③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④주계약자 관리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 사항 3)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2.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어느 하나의 공종만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 가능함을 명시



구 분	검 토 사 항
	5.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
<p>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p>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사후정산 대상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공사, 용역, 물품)</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1)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명시 2)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작성 제출 및 법 제4조 및 제9조 사항 명시
<p>기타</p>	1.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또는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2.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 물품 제조·구매

구 분	검 토 사 항
산출기초 조사서	○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 견적가격 등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원가계산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료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곱하여 구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실, 부산물 등 : 매각대금 조사가격 중 최고 가격을 적용하여 재료비에서 감 처리 ○ 노 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및 이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

3 물품(완제품) 구매

구 분	검 토 사 항
가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 견적가격 등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산출기초 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 요청금액과 심사 금액 비교표 작성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확인

4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 분	검 토 사 항
적정단가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 하였는지 여부 ○ 시중물가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연도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 적용 여부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적용 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 여부
견적서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이 적용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 적정 여부 ○ 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적용 여부



라.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 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 2) 신청대상
 - 예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자산 매각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6천㎡ 이상의 재산 취득
- 3)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 4) 감사요청 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 매각 추진 방침서, 감정평가서, 예정가격 평정조서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 5) 주요 검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검토 여부
 - 매각대상 행정재산 여부
 - 계약방법의 적정 여부
 - 매각예정가격 산정 적정 여부
 - 매각 제한사항 해당 여부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3 예산관리 업무

가. 예산의 이용·전용

-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9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 3) 감사요청 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 예산 이용·전용 계획서, 예산서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 4) 주요 검토사항
- 예산 이용·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재전용 금지, 전용 금지 편성목 등 전용 제한과목 해당 여부

나. 예비비

-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 출자출연기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참고
- 2) 신청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 3) 감사요청 시 제출서류
- 일상감사요청서
 - 예비비 집행계획서
 - 긴급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 사용 증빙자료
 -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
- 4) 주요 검토사항
- 예비비 집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 예비비 사용 제한 ※ 업무추진비, 보조금 제외

4 기타 업무

가. 기타 업무

- 기타 도지사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I. 일상감사 점검사항

1.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작성
2. 일상감사 자체점검 Check-list
3. 주요 감사 지적사례

Ⅲ 일상감사 점검사항

1 일상감사 Check-list 작성

가. 목 적

-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여 일상감사 소요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행정오류를 조기에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운영방법

- 업무별 해당 자체점검표를 집행부서(사업부서)에서 작성하여 일상감사 신청 공문에 첨부 제출하되, 별도 제출할 경우 부서장 날인 후 제출

다. Check-list (자체 점검표)

- 신청건수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상감사범위 업무에 적용

분야	대상업무	점검표
주요정책 집행업무 (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집행과제, 평가결과 확정 전)	양식 1
	2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인 국·도비 보조사업 (단, 단순히 보조금만 교부하는 사업은 제외)	양식 1
	3 민간보조사업,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양식 1
	4 기타 기관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양식 1
계약업무 (4)	6 추정가격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설계변경 포함)	양식 2-1
	7 기타 공사 3억원 이상 (설계변경 포함)	양식 2-2 양식 2-3
	8 용역 2억원 이상	양식 3-1
	9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양식 3-2
예산관리업무 (2)	10 예산 이용·전용	양식 1
	11 예비비 집행	
기타업무(1)	12 기타 도지사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양식 1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작성 오류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으나, 다만,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 작성 또는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금지



2 일상감사 자체점검 Check-list

양식 1. 공통분야 Check-list

연번	검토항목	점검결과
1	본 방침서(사업계획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최초방침서 또는 변경방침서 - 변경방침서라면 최초방침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 (자료제출)	최초방침 <input type="checkbox"/> 변경방침 <input type="checkbox"/>
2	본 방침서(사업계획서)는 종류는 정하였는가? - 주요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업무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등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 여부 - 다른 법령, 방침, 지시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방침서(사업계획서)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 목표 및 기본 방향, 사업예산, 사업 규모 및 시기, 사업 추진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재원조달, 집행, 정산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예산편성 및 집행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정산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투자심사 및 재심사 절차 이행여부 등 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적법한 입찰공고 기간을 적용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입찰방법이 적정한가?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입찰공고문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계약방법은 적절한가?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조달발주사업으로 계약의뢰 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예산 이용·전용에 해당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예산 전용 제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 전용 후 재전용 금지 - 타 편성목으로 전용금지 :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타 편성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업무추진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등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가? - 업무추진비·보조금으로 집행불가, 긴급재해대책 제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양식 2-1. 공사분야(토목) Check-list

연번	검토항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1	법령 체계에 따른 공사는 분류하였는가? - 종합공사(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목건축) 대상 - 전문 및 기타공사(시설물유지관리, 금속, 도장, 방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입찰참가자격은 적정한가?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여부 -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2종류 이상의 전문공사(도장, 방수, 기계설비, 상하수도, 토목공사 등)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종합공사(토목, 건축 등)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전문공사로 발주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 하는 것은 아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데, 토목공사 등과 통합발주 하는 것은 아닌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예규에 따라 이행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지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대상 업체의 건설업 면허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장애요인, 예산집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사기간을 적용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설계서 및 설계도면 작성이 적정한가? - 시방서, 공사물량, 수량산출, 단가(자재)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단가(자재) 산출이 적정한가? - 거래실례가 및 견적서 등 최저가 적용, 건설기계장비 적용, 운반비 계상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일위대가표 작성이 적정한가? -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적용, 할증율, 수량의 단위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원가계산 준비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노무비, 각종 보험료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설계변경 시행시기, 방법, 공기, 사유 등이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산출이 적절한가? - 낙찰율 적용, 협의단가, 평균단가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양식 2-2. 공사분야(건축) Check-list

연번	검토항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1	법령 체계에 따른 공사는 분류하였는가? - 종합공사(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목건축) 대상 - 전문 및 기타공사(시설물유지관리, 금속, 도장, 방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입찰참가자격은 적정한가?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여부 -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2종류 이상의 전문공사(도장, 방수, 기계설비, 상하수도, 토목공사 등)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종합공사(토목, 건축 등)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전문공사로 발주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 하는 것은 아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데, 건축공사 등과 통합발주 하는 것은 아닌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예규에 따라 이행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지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대상 업체의 건설업 면허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장애요인, 예산집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사기간을 적용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에 적정한가? - 공종별 시방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공사 물량이 적정한가? - 공종별 물량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 산출물량이 과대·과소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설계 도면이 적정한가? - 설계도면에 세부상세도 등이 적정하게 배치하였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공사 가설건물 설치가 적정한가? - 가설건물 면적이 공사규모에 적정한지 여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건축물의 철거·해체공사 시 석면조사를 사전 실시하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설계변경 시행시기, 방법, 공기, 사유 등이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양식 2-3. 공사분야(기타) Check-list

연번	검토항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1	법령 체계에 따른 공사는 분류하였는가? - 종합공사(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토목건축) 대상 - 전문 및 기타공사(시설물유지관리, 금속, 도장, 방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입찰참가자격은 적정한가?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여부 -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관련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 부서 등과의 업무협의 및 승인·인허가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타 공사와의 중복성, 연관성이나 개선사항 등 포함되었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을 예규에 따라 이행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지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공사 특성에 맞는 업종 등록을 한 건설업체인가? - 업체 시공능력 적정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장애요인, 예산집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사기간을 적용하였는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에 적정한가? - 공종별 시방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공사의 물량이 적정한가? - 공종별 물량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 산출물량이 과대·과소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여 시공 중 설계자와의 지속적인 보완·지원 등 협조가 필요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필수 관급자재(조명기구, 분전반 등) 누락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공사중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적정 수립여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양식 3-1. 계약분야(용역) Check-list

연번	검토항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범위가 명확한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적법성, 사유 및 근거의 명확화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관리 감독 정산 등 규정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에 대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검토결과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용역의 계약방법 선정은 적절한가?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일반경쟁 외 계약방법에 대한 사유서 작성과 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 등록업체, 면허소지여부, 지역제한, 특정개인 및 단체 또는 기업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 해당하는가?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위원구성 및 심사(평가)위원 선정방법은 공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건설폐기물이 100ton 이상인 경우 분리 발주하였는가? - 경상남도에서 조사 공표한 연도별 폐기물 처리 단가 적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최저가 단가 적용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양식 3-2. 계약분야(물품) Check-list

연번	검토항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1	물품구매 발주 방침서나 세부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관리 감독 정산 등 규정하고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동종 물품을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할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용역의 계약방법 선정은 적절한가?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사회적기업상품(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가 적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 시행하였는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에 대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검토결과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 해당하는가?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물품구매시 조달청 쇼핑물 등재물품 우선 구매 여부 판단 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가격산출조사 및 예정가격조사가 적정한가? - 물품 가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제작구매 시 표준규격서를 작성 적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주요 감사 지적사례

1. 예산·계약 분야

①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용역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수의계약 체결

- 군정뉴스 제작 및 방송송출 용역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지상파 또는 종합 유선방송사업 허가업체로 ○○군 포함 도내 5개 시군에 지상파 또는 케이블TV에 방영가능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방송 단독 응찰로 유찰이 예상됨에도 입찰공고하여, 유찰을 근거로 ◎◎방송과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매년 50~60백만원 정도)하였고, 계약 관련 서류('14년) 분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공기록물법」 제26조 위반

② 특정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법령에 근거 없이 수의계약 체결 및 분할발주를 통한 1인 수의계약 체결

- '15년부터 '17년까지 ○○○○사업 등 총 24건, 1,132,924천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없음에도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산림사업 중 총 31건 523,964천원의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주) ◆◆ 등 7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위반

③ 동일구조물 공사 분할계약 및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특허를 이유로 물품 제작·설치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16년 2월 도 감사관실로부터 특허에 의한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특허청 유사특허를 조회하여 대응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토록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교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허를 이유로 물품(관급자재) 제작·설치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총 7건 33억 7천만원을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
⇒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77조제1항 위반

4 다수공급자계약물품 분할 구매 부적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물품구입 분할 발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는 MAS 2단계 경쟁으로 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 회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 요구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비슷한 시기이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개별로 설계되어 발주된 공사, 조기집행 달성 등을 이유로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를 통해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5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소홀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시군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질서 훼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관련법령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지속적으로 시군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질서를 훼손함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2. 공사분야

1 시설공사 분할계약 금지 미이행

시설공사의 복합공종(토목, 건축, 조경)임에도 분할 계약 체결

-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토목, 조경, 구조물, 전기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행 건의서에도 토목, 조경공사를 동시에 시행 건의 하는 등 당초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토목, 건축, 조경 복합 공종임을 알 수 있었음
 - 그런데도 토목공사만 별도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조경, 건축, 전기공사의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용역 시행 품의를 받고 수의계약 의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조경과 건축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음
- ⇒ 「지방계약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5.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

2 건설공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절차 부적정

공사원가 사전검토절차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나 내부검토 등 미이행

-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대상이 아닐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공사원가를 검토하여 일반 입찰에 부치거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하임에도 부득이 조달청장에게 사전검토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의뢰에 대한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처리해야 함
- 그런데도 추정가격이 52억으로 조달청장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이 아닌 공사를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나 내부검토 없이 조달청장에 원가 검토를 의뢰하여 조달 수수료를 집행함
-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에서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평가받고 선정되었으므로 하도급계획을 이행³⁾해야 함에도 시공능력평가액과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검토없이 승인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위반

③ 특허제품에 대한 관급자재 수의계약 검토 부적정

특정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세출 예산 집행의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따라 특허를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특정 특허제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도, 조달청 등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한 대체·대용품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도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수의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도록 수의계약 검토를 소홀히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위반

○ 해상펜션 내 집기류인 에어컨, 냉장고, TV 및 청소용 고압세척기 등의 물품을 자산취득비가 아닌 공사비로 구매하도록 계획하고, 보조기충용 쇠석골재와 순환골재의 경제성 검토소홀 및 공사내역과 부합되지 않게 환경보전비를 과다하게 반영하는 등으로 공사비 약 105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도록 설계용역 감독을 소홀히 하고 발주 후 설계변경 등의 조치 미이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소홀

④ ○○○○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 시설공사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른 법령에 자격요건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3)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 시공기술상의 특성이나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할 수 없는 공종을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방계약법」 제6조 위반

5 설계내역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경사구간, 순환골재의무사용 등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여부에 대해 미반영

- 종단경사 5%이내의 신설도로 구간임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미끄럼방지포장을 반영하거나,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 임에도 제품소요량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관보호용 골재는 모래 대신 경제적인 석분으로 대체함이 경제적이며,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운반거리에 대한 정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위반

6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하지만,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 6개 공사(보조사업자: ○○농협, ○○영농

조합법인 등) 보조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과 무관한 ‘쓰레기 재활용함, 방한복, 음주측정기’ 등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적정하다고 정산검사 완료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

⑦ 교량 확장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수의계약 검토 부적정

동일구조물인 교량공사 분리 발주로 인한 관급자재 별도 구매 설치

- 동일구조물인 교량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지 않고 교량의 거더 부분을 교대, 교각 및 슬래브 등의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 구매·설치하도록 설계 반영하여 공사발주 함
- 특허제품을 구매할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데도, 조달청 등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한 대체·대용품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 함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및 제77조 위반

⑧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계약 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하는데도 당초 사업구간과 구분된 별도의 시공 장소에서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증액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되는 물량은 협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당초 낙찰률인 85.508%보다 높은 92.75%로 설계 변경 하였으며, 신규공사로 발주할 경우(통상 87.745%)보다 5.005% 높게 적용되어 공사비 약 39백만 원 상당이 과다 계약되는 등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실시함

⇒ 「지방계약법」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위반

IV. 일상감사 주요사례

1. 공사분야
2. 용역분야
3. 물품분야
4. 기타분야

Ⅳ 일상감사 주요사례

1 일상감사 공사분야

1-1 ○○항 ○○○ 수협부두 설치공사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동 일원
- 2) 사업규모 : 잔교식 부두 L=40, B=27.5m
- 3) 공 사 비 : 3,172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 정 ·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수산물 하역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임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등부표 설치 수량(4기 → 2기) 조정(육지부 측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철근 가공 및 조립 조정 반영 등	수 용 (감 10백만원)

**1-2 ○○○항 신항 소형어선 수용시설 파제제 설치공사****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동 일원
- 2) 사업규모 : 파제제 설치(B=4.5m, L=62.5m)
- 3) 공 사 비 : 2,260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내 초·중등학생 대상 초/중/고급/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SW체험관 및 스마트 교실 구축 하여 SW창의융합인재 양성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0Ton 이상의 폐기물처리 용역은 분리 발주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침하사석투하, 기초사석투하, 피복석투하 및 피복석고르기 작업반장 조정 등 · 힐티앙카 : 3개 → 1.5개 · 보온핀 : 6개 → 삭제 	수용 (감 24백만원)

1-3 지○○○○호선 ○○ ○○도로 굴곡개량공사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면 ○○리(지○○○○호선)
- 2) 사업규모 : 굴곡도로 개량 L=220.0m, B=7.5~14.0m
- 3) 공 사 비 : 790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굴곡개량공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원가계산 준비율 변경으로 조정 ⇒ 기타경비(9.0% → 6.7%) · 추정 암선에 의한 발파암 깎기 품 조정 	수용 (감 30백만원)

**1-4 ○○ ○○○○상설경기장 리모델링 공사****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동 ○○대학교 ○○○○○○ 기념관
- 2) 사업규모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PC존, 창업공간, 선수대기실, 방송실
- 3) 공 사 비 : 3,329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 ○○○○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한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설계도서 검토결과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조립설치공사업, 도장공사업, 철거공사업 필요한 공정으로 판단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역제한(경상남도)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도모하기 바람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예방기술지도비, 물품은 내역 삭제 후 별도 발주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3회 → 2회 · 안내데스크 : 대리석→인조대리석 · 인테리어필름 단가조정 30,000원 → 27,500원 	수용 (감 100백만원)

1-5 ○○○○ **맞춤형 청년주택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동 일원
- 2) 사업규모 : 오피스텔 12호, 근린생활시설 2호
- 3) 공 사 비 : 2,280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청년주거정책 및 청년 인구유입을 통한 지구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목적 및 필요성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장애인없는 생활환경인증 등급 등 각종 인증과 관련한 인증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 확인 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행 하시기 바람.	수 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철근 공장가공 : Type-II → Type-I · 승강기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냉난방기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폐기물처리비 27,756원 → 26,954원	수 용 (감 50백만원)

**1-6 한우 축사 증축 공사****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군 ○○면 ○○리 일원
- 2) 사업규모 : 한우 축사 증축 2동 연면적 1,084㎡
- 3) 공 사 비 : 1,542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한우 사육두수 및 시설 확충으로 한우 개량 신규사업 확대 추진 및 도내 한우 개량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타당함 · 아연도금 도장 및 에폭시도장(레기칠)은 철저한 공사감독(준공검사)을 시행하여 설계서(시방서) 규격에 맞게 시공을 확인하시기 바람 	수 용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지역제한(경상남도)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도모하기 바람.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미관을 고려하여 축사 피뢰침 위치 조정 · 가설공사 내역 오류 : 크레인 15hr 삭제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통로쪽 삭제 · 철근콘크리트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경량형강골조조립설치 : 철공12.54인→11.913인 	수 용 (감 115백만원)

1-7 ○○ ○○○○ 산업단지 전기공사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면 ○○리, ○○리 일원
- 2) 사업규모 : 가로등 312본, 공원등 42본, 신호등 86개, 단속카메라 등
- 3) 공 사 비 : 3,586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 사업목적 및 필요성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및 지역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입찰 공고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수 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가설사무소(창고) 누락 → 컨테이너 3동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15% → 5% · 각종전선관 설치: 노무비 90% · 신호등맨홀: 케이블공삭제 · 가로등설치 : 할증 110% → 100% · 가로등이설 : 할증 110% → 100% 	수 용 (감 232백만원)

**1-8 ○○자동차 ○○○센터 신축 전기공사****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면 ○○리 일원
- 2) 사업규모 : 연구실, 사무실 등 연면적 1,990.56㎡(지상 2층)
- 3) 공 사 비 : 889백만원
-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자동차 ○○○센터 신축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 제 '22. 8. 18. 시행)	수 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자재할증 : 할증10 → 5% · 공구손료 : 3% → 2% · 각종전선관 설치: 노무비 90%	수 용 (감 40백만원)

2 일상감사 용역분야

2-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용역개요

- 1) 사업위치 : ○○군 ○○면 일원
- 2)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등
- 3) 용역비 : 1,635백만원
- 4)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반조사 및 지형 현황측량은 분리 발주하여야 함 ·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 시 실시설계용역 결과자료 활용으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세부항목 일위대가는 조정 필요함을 명시 	수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조정 : 00군에서 제공하는 단위배수구역 내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의 경과년수를 반영한 보정계수 적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면적 조정 반영 	수용 (감 32백만원)

**2-2** ○○ ○○○○○○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가. 용역개요**

- 1) 사업위치 : ○○군 ○○면 ○○리 일원
- 2) 사업규모 : 시공, 품질, 안전 등 시공단계 전 분야에 대한 관리 및 기술검토
- 3) 용역비 : 2,396백만원
- 4)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공사감독 및 공사현장 관리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적정	수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공사복잡도 조정 ⇒ 보통 → 단순	수용 (감 40백만원)

2-3 ○○자동차 ○○○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용역개요

- 1) 사업위치 : ○○시 ○○면 ○○리 일원
- 2) 사업규모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3) 용역비 : 1,127백만원
- 4)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자동차 ○○○센터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지방계약법」에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중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시기 바람 · 관련 용역 기술인력 투입 인원수 산정 및 배치계획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사업내용 및 현장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분야별 기술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 바람 	수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공사비 산정은 계약심사 후 금액으로 산정 · 주재비 20% → 10% 	수용 (감 40백만원)

**2-4 ○○군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가. 용역개요**

- 1) 사업위치 : ○○군 ○○읍 ○○리 일원
- 2) 사업규모 : 공공 공동주택
- 3) 용역비 : 1,163백만원
- 4) 입찰방법 : 설계공모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지방소멸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공모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게 심사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응모한 자가 공개된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접촉하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지역 건축설계사무소 보호를 위해 공공주택 설계공모에 단독 참여시우대 방안 등을 검토 바람 	수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에 따라 설계용역금액 적정하게 산출됨 	-

2-5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구축 용역

가. 용역개요

- 1) 사업위치 : 도내 ○○개 시·군
- 2) 과업내용 : 도내 ○○개 시·군의 23개소 건축물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
- 3) 용역비 : 659백만원
-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실내공간의 복잡화에 따라 대형재난사고 및 도시문제 예측·진단시스템(시뮬레이션) 필요성이 대두되어 3차원 공간정보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건축물 23개소의 실내공간정보를 LOD3.0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함 · 소프트웨어사업재[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정한 것은 적정함 	수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조달발주사업으로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계약심사(원가심사) 제외 사업에 해당됨 	-

**2-6** ○○ ○○○○○○하천재해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구 ○○리 일원
- 2) 사업규모 : 건설폐기물 25,087ton 운반 및 처리
- 3) 용역비 : 1,186백만원
- 4)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100톤을 초과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25,087ton이므로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함 ·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거래실례가격(전적가격)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22년도 6. 1. 기준, 15,990원)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였고, 상차비를 중복계상하여 조정 심사함(조정내역) 폐기물 운반비 22,120원 → 15,990원 	수용 (감 169백만원)

2-7 ○○ ○○○○○○○○○○○○ **엑스포 셔틀버스 임차 및 교통관리 용역**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군 ○○면 ○○○○로 일원
- 2) 사업규모 : 셔틀버스 운행 (평일)4대/20분 배차, (휴일)11대/5분 배차
- 3) 용역비 : 662백만원
-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2023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관리 용역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함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2023 ○○○○○○○○○○엑스포」는 국제 행사로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버스 임차 및 교통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버스임차 및 교통관리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판단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한 경쟁 입찰 등 계약 방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람	의견제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 의견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및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원가심사)를 제외할 수 있음	-



3 일상감사 물품분야

3-1 LNG 병커링 시험설비 부유식 구조물 구매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군 ○○면 ○○리 일원
- 2) 사업규모 : LNG 병커링 시험설비 부유식 구조물 1식
- 3) 사업비 : 1,750백만원
- 3) 입찰방법 : 조달청 계약의뢰,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나. 일상감사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LNG 병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제해사기구(IMO)의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기술 경쟁력 확보와 LNG 병커링 관련 기술 선점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의견제시 · 물품·용역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불가	수용
기타	- 의견 : 의견제시 ·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조달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준수, 설계 시공의 일괄발주,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 발주 유형에 따른 책임과 하자보증의 유불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3-2 경남 ○○○○대학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단가계약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군 ○○읍 ○○로○○번길 ○○
- 2) 사업규모 : 식재료(수산물류 등 5건)
- 3) 사업비 : 192백만원
- 3) 입찰방법 : 소액수의계약, 단가계약

나. 일상감사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신선한 식재료 공급 및 내실있는 식당운영을 위한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의견 : 적정 ·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일정기간 구매량이 확정될 수 없고 공급시기별로 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기초단가에 의한 단가계약 방식 추진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한 것은 적정	수용
기타	- 의견 : 의견제시 · 공고문의 기초금액과 연간 구매예정 금액을 명확히 구분 기재 ·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나,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매 단위 축소 또는 분할하여 발주 금지	수용



3-3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환경 구축사업 물품구입

가. 사업개요

- 1) 사업위치 : ○○시 ○○구 ○○○○로 일원
- 2) 사업규모 :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 매너저 등 8종 135식
- 3) 사 업 비 : 500백만원
- 3) 입찰방법 : 조달청 계약의뢰,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나. 일상감사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민간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기관 내부 보안 통제 수준을 유지하고 시스템 운영 안전성 제고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 의견 : 적정 · 제3자단가계약 체결되어 있는 물자의 경우 조달청 구입 요청 적정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어 있는 물자의 경우 조달청 구입 요청 적정하며, 조달청 고시 제3조에 따라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조달청 구입 요청하는 것이 적정	수용
기 타	- 의견 : 의견제시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입 목적에 따른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목과 규격을 명확히 확인	수 용

4 일상감사 기타분야

4-1 농작물 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재난지원금 도 예비비 사용

가. 사업개요

- 1) 피해종류 : 호우
- 2) 발생상황 : 호우로 인한 주요 과수작물 낙과 흙집, 벼 도복 등 피해 발생
- 3) 피해지역 : 도내 ○○개 시·군
- 4) 재난지원금 : 금9,631백만원(국비 6,742 도비 1,272, 시군비 1,617)
- 예비비 사용 : 금1,272백만원(도비)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 의견 : 적정 · 긴급한 재난·재해 대책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고려할 때, 9월 호우피해로 인해 14개 시·군에 과수작물 낙과(탄저병 유발)·흙집 및 벼 도복 등 피해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 복구계획으로 재난지원금(농약대, 농업시설 복구) 지급을 위한 상기의 예비비 사용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기 타	- 의견 : 의견제시 ·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수 용

**4-2 2023년 ○○○○ ○○○○엑스포 참가 세출예산 전용****가. 사업개요**

- 1) 사업대상 : 2023년 ○○○○ ○○○○ 엑스포 참가
- 2) 전 용 액 : 금70백만원
- 3) 전용사유 : '23년 엑스포 행사가 ○○월 개최 예정으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전시관 주제 선정 및 디자인 논의 등 전시관 조성을 위한 예산전용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기존 ○○○○박람회의 도 전시관 조성 및 운영을 경남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설립목적 및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박람회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조치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엑스포 참석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당초 위탁 사업비 편성목을 행사 운영비(201-03)로 전용 하는 것으로 적정함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전용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수 용

4-3 공유재산 매각

가. 사업개요

- 1) 매각대상 : ○○시 ○○면 ○○리 ○○○번지(전) A=571㎡(토지)
- 2) 기준가격 : 금60백만원
- 3) 매각방법 : 수의계약

나. 일상감사 주요 의견

주요 검토사항	일상감사 의견	수용여부 (사업비 증·감액)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적정 ·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용도폐지되어 현재 일반재산으로 매수신청인(○○○○○○○협동조합)이 2017년부터 경작용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 · 매수신청인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생산자 단체에 해당하므로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1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재정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타당함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의견제시 · 매각 대상 재산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時價)로 결정하고 공개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수 용

V. 참고자료

1.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2.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3.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5.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

V 참고자료

1.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시행 2021. 1. 4.]

(제정) 2011-06-30 훈령 제 1213호

(일부개정) 2014-09-01 훈령 제 1295호 경상남도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훈령

(일부개정) 2019-12-05 훈령 제 1415호

(일부개정) 2020-12-31 훈령 제 1438호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다른 규정의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대상업무·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일상감사의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1. 본청(의회사무처 포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도비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 단체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제4조(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제5조(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1>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1>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9.1>

③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 효과성 · 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의 결과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장과 협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9.1>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사항의 처리 및 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 일상감사범위 (제4조 관련)

대 상 업 무	범 위												
<p>주요 정책의 집행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집행과정, 평가결과 확정 전)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인 국·도비 보조사업(단, 단순히 보조금만 교부하는 사업은 제외) ○ 민간보조사업,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 기타 기관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부기관장 등의 결재 및 이사회 등 주요 회의 부의사항 등 												
<p>계약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기타 계약 <table border="1" data-bbox="419 746 1260 88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 분</th> <th colspan="2" style="width: 40%;">공사</th> <th rowspan="2" style="width: 10%;">용역</th> <th rowspan="2" style="width: 20%;">물품 제조·구매</th> </tr> <tr> <th style="width: 15%;">종합</th> <th style="width: 25%;">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추정가격</td> <td>5억원</td> <td>3억원</td> <td>2억원</td> <td>2천만원</td> </tr> </tbody> </table> ○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자산 매각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거나 6천㎡ 이상의 재산 취득 ○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추정가격을 이유로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에 해당되는 계약 -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구 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가격	5억원	3억원	2억원	2천만원
구 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가격	5억원	3억원	2억원	2천만원									
<p>예산관리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5천만원 이상의 이용·전용 예산 변경사항 -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확정 전)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지출(결정 전)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300만원 이상) ○ 기관의 주거래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p>기타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도지사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집행부서(기관)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건 명 :

회신일자 :

— 감 사 의 견 —

1. 의 견

2. 사 유

감 사 위 원 장

※ 작성요령 — 감사위원회

- 집행부서 : 일상감사 대상업무 처리 부서·기관명을 기재한다.
- 건 명 :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접수번호 : 일상감사요청 문서접수부상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접수일자 : 일상감사 의뢰문서 접수부상의 접수날자를 기재한다.
- 회신일자 : 감사위원회에서 집행부서에 회신하는 날자를 기재한다.
- 의견란과 사유란 :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이 집행부서의 처리의견과 같을 때는 집행부서의 처리내용과 같다고 의견란에 기재하고 사유란은 생략한다. 집행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의견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법적근거와 지침 등을 명시한 사유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수 신 : 감사위원회

일 자 :

집행부서의 장 : (인)

1. 건 명
2. 조치요구내용(감사의견)
3. 조치한 내용
4. 사유 및 관련법규

※ 작성요령 — 집행부서

- 건명 : 당해업무 제목을 기재한다.
- 조치요구내용 : 감사관이 조치를 요구한 내용을 기재한다.
- 조치한 내용 : 감사관이 통보한 감사의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전부 또는 부분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과 반영후 그에 따라 보완 지시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사유 및 관련법규 : 조치한 내용에 대한 사유 및 관련법규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최종결재권자의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때는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처리대장**

일 상 감 사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건명	업무 요지	감사결과		조치결과		감사자	집행부서 (담당자)
				통보일	감사의견	접수일	조치내용		

※ 작성요령 — 감사위원회

- 접수번호 : 일상감사 요청 접수 순위대로 기재한다.
- 접수일시 : 일상감사 요청을 접수한 날자를 기재한다.
- 건 명 : 일상감사 요청서에 기재된 제목을 기재한다.
- 업무요지 : 일상감사 요청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 통 보 일 :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에 통보한 날자를 기재한다.
- 감사의견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의견을 기재한다.
- 접 수 일 : 조치결과를 접수한 날자를 기재한다.
- 조치내용 :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기재한다.
- 감 사 자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담당자를 기재한다.
- 집행부서 : 감사요청을 한 집행부서와 업무처리 담당자를 기재한다.

2.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08-09-18 규칙 제 2839호
 (일부개정) 2012-10-11 규칙 제 3007호
 (일부개정) 2014-08-21 규칙 제 3071호
 (일부개정) 2023-03-30 규칙 제 33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
 - 가. 도분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의회사무처
 - 라. 도의 합의회 행정기관
 - 마. 시·군
 - 바. 도 지방공기업
 - 사. 도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23.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2014.8.21>
- 다.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마.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2023.3.30.>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2.10.11>
- 4.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4.8.21., 2023.3.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2.10.11>
- 2. 삭제 <2012.10.11>
 - 가. 삭제 <2012.10.11>
 - 나. 삭제 <2012.10.11>
 - 다. 삭제 <2012.10.11>
-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신설 2012.10.11>
-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0.11>
-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신설 2012.10.11>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2.10.11>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2.10.11> <개정 2014.8.21>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2.10.11>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11>

제5조(심사요청)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7조(심사결과)

-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미산입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원가 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삭제 <2012.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11>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당 당 자 : (전화번호 :)		
<p>◦ 공사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p> <p>◦ 첨부 서류</p> <p>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p> <p>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p> <p>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파일 및 도면)</p> <p>4. 품셈에 대한 내역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p> <p>5. 그 밖에 참고자료(시행품의서, 방침서, 실시설계용역보고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p>			

발신명의

<별지 제3-1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 . .	협 조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 . .						
건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p>◦ 물품구매 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p> <p>◦ 첨부 서류</p> <p>1. 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설명서(사양서)</p> <p>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p>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건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호 :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타			
<p>◦ 물품제조(수리) 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p> <p>◦ 첨부 서류</p> <p>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p> <p>2. 일위대가표</p> <p>3. 제조(수리)규격서, 설명서(사양서) 1부.</p> <p>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p>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〇 〇 〇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익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격 : 절(mm × mm) 2. 수량 : 3. 면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〇 〇 〇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4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발신명의	
------	--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 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	--



3.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제정) 2014-10-10 훈령 제 1297호

(전부개정) 2019-02-28 훈령 제 1394호

(일부개정) 2019-12-05 훈령 제 1416호

(일부개정) 2020-12-31 훈령 제 1438호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다른 규정의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5.>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 등 <개정 2019.12.5.>
2. 제1호의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허가·승인·면허 등(이하 “인가·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및 개인 <개정 2019.12.5.>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①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5.>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5.〉

②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본항신설 2019.12.5.〉

1. 감사·조사·수사·소송·행정심판·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인가·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가·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해당 인가·허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5. 해당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체 및 개인은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 종료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7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의 담당사무관, 법무담당관, 자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③ 위원은 법무담당관, 감사위원회 담당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부서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자문
2. 감사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제시
3. 그 밖에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 및 대안제시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및 의견서 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기업체 및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게 통보한 후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0.12.31.>

③ 감사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받은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소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제13조(심의결과 관리대상 작성·관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2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감사위원장은 2년마다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0.12.31.>

제17조(자체감사의 면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기관(업체) 및 부서 명	작성 자	직급(직위) : 성명 :
건 명		

1. 관련 법 규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
4. 기타 (감사부서 검토의견, 신청기관 검토의견 등)
○ ○ ○

※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보고서**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보고서**

기관 및 부서 명		작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개요(추진일정 등)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유

-
-
-

3. 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3. 검토의견

-
-
-



<별지 제3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요청서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요청서

기 관 및 부 서 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2. 주요 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3. 관련법규
4.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처리의견)

<별지 제4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 심의대상 :
- 심의결과 : 원안 통과() 수정·보완 의견제시() 기타 자문 및 대안 제시()
- 기타 자문의견

-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 붙 임 :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요청서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기관 및 부서 명		작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기관 감사부서 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감사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업 개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p>※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p>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별지 제7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 관리대장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심의날짜)	관련기관(부서)	건 명 (주요내용 간략히 서술)	심의·자문결과	비고

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7.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8.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9.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10.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11. “가이드라인“이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text{공사기간} = \text{준비기간} + \text{비작업일수} + \text{작업일수} + \text{정리기간}$$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 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13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7조의 준비기간과 제12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조건 정보제공)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나 인·허가 및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기간의 조정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장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발주청은 해당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협의·조정한다.
 2. 제1호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조정한다.
- ④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단축) ①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기간 단축계획서(안전대책 등)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 단축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시행기준)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및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80호, 2021.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140호, 2019.1.1.)」은 폐지한다.



5.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I. 개 요

1. 운영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발주청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위해 그 절차와 관리방법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제출 기관(발주청,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관리⁴⁾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이하 “협회”라 한다), 제도 운영기관(국토교통부 : 이하 “국토부”라 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3. 처리기관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무를 접수·관리하는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 현황 및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관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분기별⁵⁾)하고,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장)는 협회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확인하고 미수립 및 미준수사항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한다.

4) 접수된 현황 및 작성내용의 적정성 검토와 보완 등 관리 업무

5)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II.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일반

□ 근 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목 적

-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시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공사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기술자문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

□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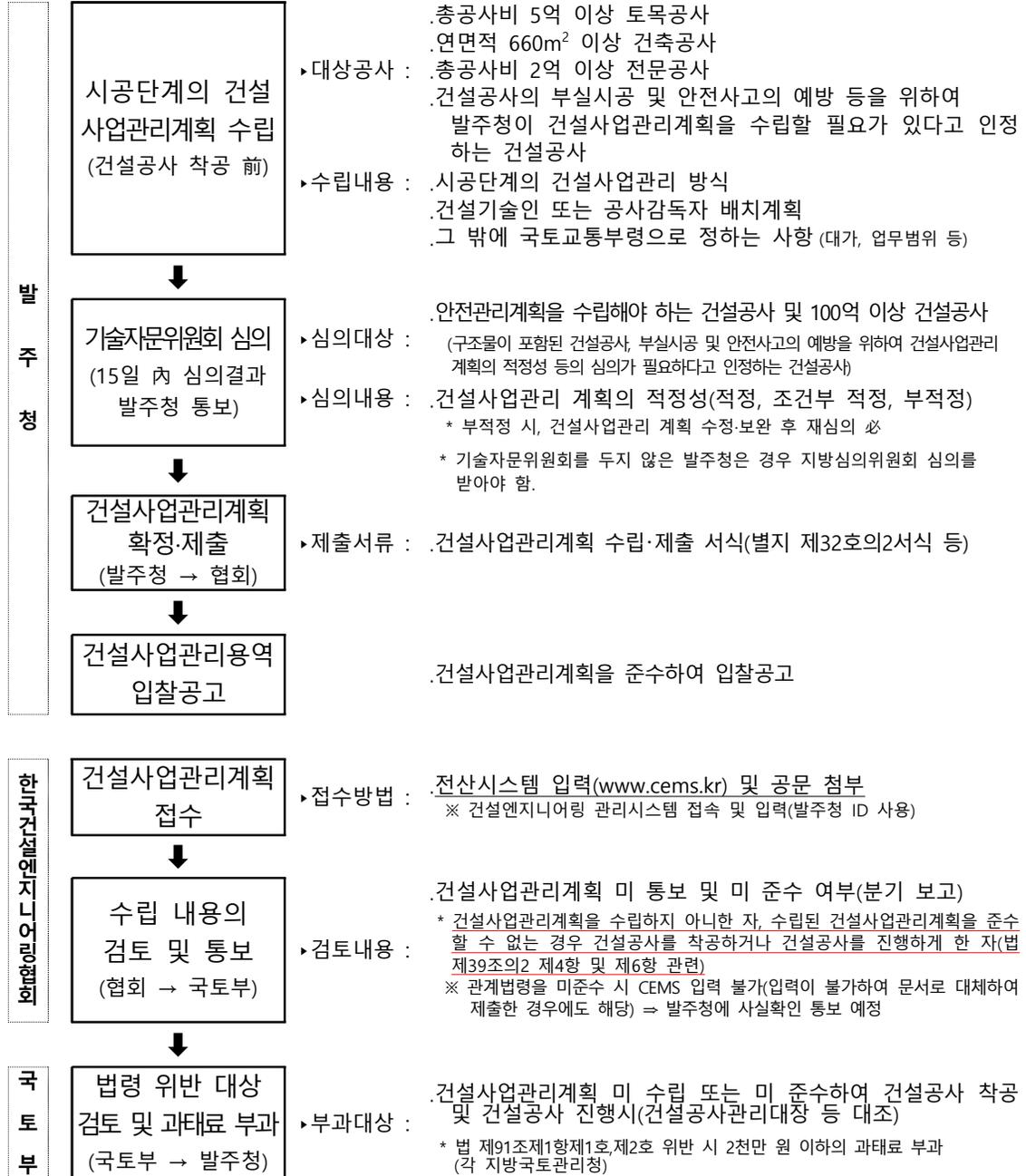
- 업무의 위탁기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법령준수 위반 및 과태료 처분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미통보 및 미준수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 미수립·미제출 또는 투입인력 부적정 등 사실확인의 단계별 검토 및 확인절차

- ① KISCON 및 나라장터의 건설공사계약현황(관리대장 등)을 연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현황과 비교·검토(계획수립 여부 확인)
- ②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현황과 건설사업관리 실적(CEMS 등재) 현황과 비교·검토(발주 여부 및 적정인력 투입 여부 확인)
- ③ 건설공사관리대장과 건설사업관리 실적자료의 비교를 통한 계획 미수립 현황의 확인

2. 사업특성 및 가용인력 검토(예시)

■ 사업관리 방식 검토 절차에 따른 계획수립(평가점수 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1]

① 사업특성 평가 ⇒ ② 소요인력 산정 ⇒ ③ 가용인력 산정 ⇒ ④ 가용인력 역량평가
⇒ ⑤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검토 ⇒ ⑥ 총 소요인력 산정(건설사업
관리 배치계획) ⇒ ⑦ 사업관리방식 조정(필요시) ⇒ ⑧ 사업관리방식 확정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 평가 요약

구 분	합 계	공사특성	공사수행방식	사업여건	발주청 역량
배점	100	30	15	25	30
평가	78	15	13	10	30

○ 평가결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평가점수	80 이상	50~79	50 미만
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2] 소요인력 산정(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준)

구 분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복잡도	소요인력
용역명	217억 원	25개월	20% (복잡) 15% (보통) 10% (단순)	3,137인/일 784.3(인/일)

※ 소요인력 : 총 3,921.3인일(178.2인/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137인/일(상주 2,697, 비상주 440), 공사감독자 784.3인/일

3] 가용인력 산정

구 분	실무경력 (등급)	투입인월 (A)	환산비 (B)	적용인월 (A×B)
합계		103	-	103
김OO 부장 (총괄, 건축)	25년 (특급)	25	1.000	25
이△△ 차장 (건축)	18년 (고급)	25	1.000	25
박XX 과장 (건축)	15년 (고급)	25	1.000	25
최OO 대리 (토목)	10년 (중급)	12	1.000	12
정△△ 주임 (조경)	3년 (초급)	6	1.000	6
윤XX 과장 (기계)	12년 (고급)	10	1.000	10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61호, ' 21.07.14) 적용



④ 가용인력 역량 평가

- 위에서 산정한 가용인력을 감안하여 붙임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기준”의 발주청 역량 중 경력 등에 따라 역량을 평가

⑤ 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확정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 49점 이하인 경우, “직접 감독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 50~79점인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선택 가능)
 - (# 당해 사업의 공사감독자 투입은 소요인력의 20%를 산정하여야 함)
 - 80점 이상인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 본 사업 예시는 영 제55조제1항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200억 이상 22개 공종)에 해당하므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의 예외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소속직원이 영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직접감독” 가능(예,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 인력현황(건설사업관리 수행, 직접감독)에 따른 소요인력 대비 실제 배치인력 산정결과, 적정인력의 투입이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관리방식을 적용
(# 발주청은 소요인력 인월수가 실제 배치인력 인월수와 동등이상인 경우 직접감독 수행)

☞ 例示 : 직접감독 수행 시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

구 분	'22				'23				'24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김OO(특급)														총괄
이△△(고급)														건축
박XX(고급)														건축
최OO(중급)														토목
정△△(초급)														조경
윤XX(고급)														기계

※ 배치예정 현황 : ‘직접감독’ 적용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산정·작성하여 공시한 후 건설사업 관리계획 입력(작성),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건설사업관리’ 적용 시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에 해당하는 공사감독자를 산정)

⑥ 기술자문 심의

□ 위원회 심의 적용 대상공사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
 -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022년도 0000 상수도 보수공사(XX외 2개소) 건설사업관리계획』
기술자문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20 . .

00도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OOOO 상수도 보수공사(XX외 2개소) 건설사업관리계획』
기술자문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개최현황

- 심의안건 :
- 심의기간 : 20 . . . ~ 20
- 심의방법 : 현장(서면) 심의
- 심의위원 : 명

구분	성명	소속	전문분야	심의결과
위원장	홍길동	OO상하수도사업소	당연직	적정
위 원	이몽룡	(주)OO엔지니어링	건축계획	적정
"	연놀부	(주)XX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안전	적정
"	이태백	AA도시공사	토목시공	적정
"	박문수	△△대학교	기계설비	적정

심의결과 : 적정(위원 5명 중 5명)

조치계획

- 심의결과 “붙임” 사항을 OOO사업부에 통보, 업무추진 조치

붙임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결과(의견서) 1부. 끝.



심의결과(의견서)

자문위원	심의 의견
홍길동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방식 적정 ○ 예정공정표에 적합하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고 공사 관리관을 둘 것
이몽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임(200억원 이상) ○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예외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배치인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감독 업무 시행
연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공휴일 등 효율적 계획수립 및 운영 ○ 안전관리분야 투입 건설기술인 등급 상향 조정 필요
이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기준에 따른 소요인력과 가용인력이 적정 ○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하여 감독
박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인력 적정 ○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기술자문위원 심의 결과

심의번호	제20 - 000호
심의안건	『2022년도 OOOO 상수도 보수공사(XX외 2개소) 건설사업관리 계획』
[심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심의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결과를 제출함

20

위원 : (서명 또는 인)

OO도 상하수도사업소 기술자문위원장 귀하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인을 기준으로 한다.
-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다.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10 이하	30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이상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10	14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마.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기술지원기술인(시공단계에 한정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mm이상 하수관거 - 400mm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2)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 공종 ·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운수시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적용 ‘공사종류’ 목록(분류표)

구 분	공사종류
1-1. 토목선형-도로분야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 일반교량, 장대교량, 교량 포함 도로, 터널 포함 도로, 도로확포장, 입체교차로
1-2. 토목선형-철도노반분야	철도노반(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지하철), 교량 포함 철도
1-3. 토목선형-철도궤도분야	철도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지하철), 교량 포함 철도
1-4. 토목선형-하천분야	하천정비(국가, 지방), 하천개수, 생태하천, 하천제방, 호안, 하도, 하천 수문, 관개수로, 준설.매립
2-1. 토목비선형-항만분야	항만(준설 및 매립, 배후부지, 물양장,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 시설), 접안시설(컨테이너부두, 일반 및 기타부두, 자동차계류장, 여객계류장), 부잔교, 마리나, 갑문, 수문, 간척.매립
2-2. 토목비선형-공항분야	공항(국제선, 국내선), 육상공항, 해상공항, 활주로
2-3. 토목비선형-댐분야	댐(우문식, 문비식), 저수시설
2-4. 토목비선형-단지 등 기타 분야	단지조성, 택지개발, 농지개발, 부지조성(공동구 및 교량 포함), 조경
3. 건축분야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운수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공용청사, 숙박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300세대이상 공공주택)
4. 플랜트 I -상하수도, 폐기물	상수도, 정수장, 하수도, 하수관로, 수로터널, 하수관거, 우수구거, 배수지, 저류조, 플랜트터널,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수송관로, 환경시설, 산업시설
5. 플랜트 II -발전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송전시설분야	발전시설(LNG복합, 석탄, 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시설(지상 LNG저장시설, 지상 LNG제외 저장시설, 지하(암반)저장시설), 저장·비축시설 송전·변전시설(관로, 전력구)

경상남도 일상감사 업무편람

발행일 | 2023. 12.

발행인 | 감사위원장 배종결

총괄감수 | 컨설팅감사담당 유승용

분야별감수 | 김준철 주무관, 최춘수 주무관
노영주 주무관, 정승희 주무관

※ 이 책자의 전문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055) 211-2173~5